

의안번호	2216477
의 퇴 인	김태선 의원
회 답 일	2026.6.17.
추계번호	26B0599

지역고용활성화법안

【비용추계서】

I. 비용추계 결과

- (일부추계) 제정안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이 시·군·구 고용심의회를 설치·운영할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2027년부터 2031년까지 매년 34억 5,000만원으로 5년간 총 172억 5,300만원(연평균 34억 5,000만원) 이상으로 추계됨
- 제정안의 다른 재정수반요인에 대해서는 추계가 곤란하여 일부 재정수반요인에 대해서만 추계한 결과로, 제정안의 전체적인 재정소요액은 추계된 금액을 상회할 것임

[표 1] 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7~2031년

(단위: 백만원)

구분	2027	2028	2029	2030	2031	합계	연평균
시·군·구 고용심의회 (안 제8조)	3,450	3,450	3,450	3,450	3,450	17,252	3,450
－ 국비	2,760	2,760	2,760	2,760	2,760	13,802	2,760
－ 지방비	690	690	690	690	690	3,450	690

주: 1.국비는 국고보조율(80%)을 추계기간 동안 동일하게 적용

2.각 표의 합계는 단수조정으로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I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2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상호 간의 협력을 바탕으로 지역 상황에 맞는 일자리 창출의 촉진 및 효율적인 지역고용정책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종합적인 계획을 마련하고 관련 제도를 개선하도록 노력하여야 함(제1항)	의무규정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책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재원을 확보하거나 해당 지역의 고용상황에 맞게 조례를 제정하는 등 각종 시책을 추진하여야 함(제2항)	의무규정
2	안 제4조(지역고용 정책기본계획의 수립)	고용노동부장관은 5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지역고용 활성화를 위한 정책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및 「고용정책기	의무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본법」 제10조에 따른 고용정책심의회(이하 “고용정책심의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수립하여야 함(제1항) 1. 지역고용 활성화를 위한 전략 및 정책 추진방향 2. 지역 상황에 맞는 일자리 창출 대책에 관한 사항 3. 지역고용 활성화를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협력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지역고용 활성화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고용노동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고용정책 기본법」 제8조에 따른 고용정책 기본계획에 부합하도록 하여야 함(제2항)	의무규정
		고용노동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음. 이 경우 자료 제출을 요청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함(제3항)	재량·의무규정
		그 밖에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제4항)	의무규정
3	안 제5조(지역 일자리 창출 대책의 수립 등)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할 지역 주민들에게 지역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자신의 임기 중에 추진할 종합계획과 연도별 세부계획을 포함하는 일자리 창출대책(이하 “지역 일자리 창출대책”이라 한다)을 수립·공표할 수 있음(제1항)	재량규정
		지역 일자리 창출대책은 기본계획과 부합하여야 함(제2항)	의무규정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 일자리 창출대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할 지역의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음. 이 경우 협조를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할 지역의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함(제3항)	재량·의무규정
		고용노동부장관은 지역 일자리 창출대책의 내용 및 추진성과를 평가·확인하여 공표할 수 있음(제4항)	재량규정
		지역 일자리 창출대책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함(제5항)	의무규정
4	안 제6조(지역고용 활성화 지원사업)	고용노동부장관은 지역고용의 활성화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이하 “지역고용 활성화 지원사업”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음(제1항) 1. 지역 내 산업, 고용 관련 정보의 수집·제공 등 지역의 인력수급 동향 조사에 필요한 사업 2. 지역 내 인력수급 상황 및 교육훈련 수요에 맞는 인력양성계획의 수립과 시행에 필요한 사업 3. 지역 내 청년·여성·고령자 등 대상별 고용정책의 수	재량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립과 시행에 필요한 사업 4. 지역 내 또는 지역 간 인력수급 불균형 해소 및 산업·지역 간 근로자 이동 지원에 관한 사업 5. 지역 내 구직자·구인자에 대한 고용정보 제공·직업소개·직업지도·취업알선 등 고용지원서비스에 관한 사업 6. 지역 기업의 고용창출·유지를 위한 고용환경의 개선, 근무형태의 변경, 인력의 재배치 등에 대한 지원에 필요한 사업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업 추진에 필요한 지원에 관한 사업 8. 그 밖에 지역 일자리 창출·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일자리 창출·유지 등 고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수립·시행할 수 있음. 이 경우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력하여 사업을 수립·시행할 수 있음(제2항)	재량규정
		고용노동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수립·시행한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음(제3항)	재량규정
5	안 제7조(시·도 고용심의회)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고용정책 기본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도 고용심의회(이하 “시·도 고용심의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함. 이 경우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에 따른 지역 노사민정 간 협력 활성화를 위한 협의회(이하 “지역노사민정협의회”라 한다)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에 구성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시·도 고용심의회로 볼 수 있음(제1항) 1. 기본계획의 시행에 관한 사항 2. 지역 일자리 창출대책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3. 지역고용 활성화 지원사업의 계획·추진에 관한 사항 4. 일자리 사업에 관한 성과평가 및 재원 분배에 관한 사항 5. 제11조에 따른 지역고용영향평가에 관한 사항 6. 제13조에 따른 고용위기지역 지정 신청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지역고용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의무·재량규정
		시·도 고용심의회회의 구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함(제2항)	의무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6	안 제8조(시·군·구 고용심의회)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 고용심의회(이하 “시·군·구 고용심의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음(제1항) 1. 지역 일자리 창출대책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2. 지역고용 활성화 지원사업의 계획·추진에 관한 사항 3. 일자리 사업에 관한 성과평가 및 재원 분배에 관한 사항 4. 제13조에 따른 고용위기지역 지정 신청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지역고용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재량규정
		시·군·구 고용심의회는 하나의 시·군·구 단위로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소속 시·군·구의 산업기반, 인구수 등을 고려하여 둘 이상의 시·군·구를 관할하는 하나의 시·도 고용심의회 및 시·군·구 고용심의회(이하 “지역고용심의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음. 이 경우 설치 기준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제2항)	재량·의무규정
		시·군·구 고용심의회의 구성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함(제3항)	의무규정
7	안 제9조(시·도 및 시·군·구 고용심의회의 운영 등)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고용심의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지역고용심의회의 심의사항을 전문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지역고용심의회에 분야별로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음. 이 경우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22조의2에 따른 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가 시·도에 구성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시·도 고용심의회의 전문위원회로 볼 수 있음(제1항)	재량규정
		전문위원회는 지역고용심의회가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연구·심의함. 이 경우 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은 지역고용심의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봄(제2항)	의무규정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고용심의회의 회의에 부칠 안건을 검토하고 그 밖에 지역고용심의회의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둘 수 있음(제3항)	재량규정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고용심의회의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할 지역의 「직업안정법」 제2조의2제1호에 따른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음(제4항)	재량규정
		고용노동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역고용심의회, 전문위원회 및 사무국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음(제4항)	재량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전문위원회, 사무국의 구성·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함(제5항)	의무규정
8	안 제10조(지역 고용 및 일자리 사업에 대한 컨설팅 등 지원)	고용노동부장관은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지역고용 활성화 및 일자리사업의 효율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음(제1항) 1. 지역의 산업 및 고용 여건 등에 적합한 일자리사업 추진을 위한 컨설팅 2. 지역고용 및 일자리사업에 대한 평가 및 그 평가에 따른 제도개선이나 예산반영에 관한 의견제시 3.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지역고용 활성화 및 일자리사업의 효율화를 위하여 고용정책심의회에서 정하는 사항	재량규정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지원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자료의 제출 또는 협조를 요청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음(제2항)	재량규정
9	안 제11조(지역 고용영향평가의 실시)	시·도지사는 소관 정책이 지역 일자리 증감 및 고용의 질 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평가(이하 “지역고용영향평가”라 한다)하고, 그 결과를 정책의 수립·시행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함(제1항)	의무규정
		고용노동부장관은 지역고용영향평가 결과 등의 제공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고, 요청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함(제2항)	의무규정
		지역고용영향평가의 절차,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함(제3항)	의무규정
10	안 제12조(지역 고용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고용정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고용 및 직업 정보를 대상으로 하는 전자정보시스템(이하 “지역고용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운영할 수 있음(제1항) 1. 지역의 구인·구직 정보 2. 지역의 직업 현황과 전망에 관한 정보 및 직업능력개발 훈련에 필요한 정보 3. 지역의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 4. 지역의 산업별 고용 동향 및 노동시장 정보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정보를 이용하여 제공하는 서비스의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정보	재량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관할 지역주민의 고용·직업정보를 수집·보유·이용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자료제공 및 관계 전산망의 이용을 요청할 수 있음. 이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함(제2항)	재량·의무규정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수집·보유·이용할 수 있는 고용·직업 관련 정보는 「고용정책 기본법」 제15조의2제3항 각 호의 정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정보로 함(제3항)	의무규정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고용정보시스템 구축·운영의 전 과정에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함(제4항)	의무규정
		지방자치단체의 업무관리담당자(제18조제2항에 따라 해당 업무를 위탁받은 관계기관 또는 단체의 업무관리담당자를 포함한다)는 지역고용정보시스템과 관련하여 알게 된 개인·법인 또는 단체의 정보를 누설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됨(제5항)	의무규정
		고용노동부장관은 「고용정책 기본법」 제15조의2에 따른 고용정보시스템의 원활한 운용을 위하여 지역고용정보시스템과 연계할 수 있음(제6항)	재량규정
11	안 제13조(고용위기지역의 지정)	시·도지사는 관할 행정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로서 급격한 고용감소 등으로 특별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을 고용위기지역(이하 “고용위기지역”이라 한다)으로 지정받으려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시·도 고용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지정 대상 행정구역 및 지원 내용을 기재하여 고용위기지역의 지정을 신청하여야 함(제1항)	의무규정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 행정구역을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받으려는 경우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시·군·구 고용심의회 심의를 거쳐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지정 대상 행정구역 및 지원 내용을 기재하여 고용위기지역의 지정을 신청하여야 함(제2항)	의무규정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고용위기지역 지정신청을 받은 경우 고용정책심의회 심의를 거쳐 해당 지역을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음(제3항)	재량규정
		고용노동부장관은 고용위기지역의 지정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산업 및 실업 상황, 향후 대응 방향 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단체나 기관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하거나 실태조사를 할 수 있으며, 자료 제공을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함(제4항) 1. 관계 행정기관 2. 교육기관·연구기관	재량·의무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3. 사업주 또는 사업주단체 4. 노동조합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준하는 단체 또는 기관	의무규정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고용위기지역의 지정 신청, 지정 절차, 지정 기간 및 지정 기간의 연장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제5항)	
12	안 제14조(고용위기지역에 대한 지원)	고용노동부장관은 고용위기지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음(제1항) 1. 고용유지 및 고용촉진에 대한 지원 2. 실업자 취업 지원 대책 수립 3. 일자리 관련 사업비 우선 지원 4. 그 밖에 고용안정과 실업자 생활 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	재량규정
		제1항에 따른 고용위기지역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제2항)	의무규정
13	안 제15조(고용위기지역에 대한 지정 해제)	고용노동부장관은 지역의 고용 사정이 호전되는 등 지원의 필요성이 적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고용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고용위기지역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음(제1항)	재량규정
		제1항에 따른 고용위기지역 지정 해제의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제2항)	의무규정
14	안 제16조(고용위기지역 청년취업 지원)	고용노동부장관은 18세 이상 34세 이하인 청년층의 고용위기지역 기업 취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이들을 고용하는 기업에 고용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음(제1항)	재량규정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 지원 내용 및 지원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로 정함(제2항)	의무규정
15	안 제17조(청년근로자의 고용과 핵심인력의 장기재직 촉진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고용위기지역 청년근로자의 고용과 핵심인력의 장기 재직을 촉진하기 위한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함	의무규정
16	안 제18조(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위탁)	이 법에 따른 고용노동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지역의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음(제1항)	재량규정
		고용노동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문 시설과 인력을 갖춘 관계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음(제2항)	재량규정
		고용노동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 또는 단체가 해당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음(제3항)	재량규정
17	안 제19조(벌칙)	제12조제5항을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의무규정

Ⅲ.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

1.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

연번	조·항(조제목)	추계여부	비고(추계 미 실시 사유)
1	안 제2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 미대상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 대해 명시한 선언적 규정으로 추계대상에서 제외
2	안 제4조(지역고용 정책기본계획의 수립)	—	• 미대상 — 제정안은 고용노동부장관은 지역고용 활성화를 위한 정책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규정하는 내용임 — 다만, 현행 「고용정책 기본법」 제8조¹⁾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5년마다 국가의 고용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제9조²⁾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로 하여금 지역고용심의회³⁾의 심의를 거쳐 지역주민의 고용촉진과 고용안정 등에 관한 지역고용정책기본계획(이하 “지역고용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제정안의 시행에 따라 ‘지역고용정책기본계획’의 수립시행 주체가 현재 시·도지사에서 고용노동부장관으로 변경될 것으로 보이나, 현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이행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어 이로 인해 추가적인 재정의 변화가 수반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됨
3	안 제5조(지역 일자리 창출 대책의 수립 등)	—	• 미대상 — 제정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관할지역 주민들에게 자신의 임기 중에 추진할 종합계획과 연도별 세부계획을 포함하는 일자리 창출대책(이하 “지역 일자리 창출대책”)을 수립·공표하고, 고용노동부장관이 그 내용 및 추진성과를 확인하여 공표·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내용임 — 다만, 현행 「고용정책 기본법」 제9조²⁾는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하여금 관할 지역 주민들에게 자신의 임기 중에 추진할 일자리 창출대책을 수립·공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현재 예산 및 행정력의 범위 내에서 이행 가능할 것으로 예상됨

1) 「고용정책 기본법」

제8조(고용정책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5년마다 국가의 고용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2) 「고용정책 기본법」

제9조(지역고용정책기본계획의 수립·시행) 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제10조제1항에 따른 지역고용심의회³⁾의 심의를 거쳐 지역 주민의 고용

연번	조·항(조제목)	추계여부	비고(추계 미 실시 사유)
4	안 제6조(지역고용 활성화 지원 사업)	×	• 미첨부 - 제3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 제정안은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하여금 지역고용의 활성화를 위한 지역고용 활성화 지원사업⁴⁾을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안 제6조제1항), 지방자치단체의 장도 일자리 창출·유지 등 고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지역고용 활성화 지원사업을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면서(안 제6조제2항),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하여금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지역고용 활성화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내용이므로, 제정안의 시행으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재정의 추가소요가 발생할 수 있음 - 다만, 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를 산출하기 위해서는 장래에 발생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역고용의 활성화 관련 사업의 시행 여부와 규모 등에 대한 정보가 필요하나, 아직 세부적인 내용이 구체화 되지 않아 현시점에서 장래에 발생할 추가재정소요를 예측하는 데 한계가 있음
5	안 제7조(시·도 고용심의회)	—	• 미대상 - 제정안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로 하여금 시·도 고용심의회(이하 “시·도 고용심의회”)를 설치·운영하도록 규정하도록 하고, 이미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노사민정협의회⁵⁾가 구성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시·도 고용심의회로 볼 수 있도록 규정하는 내용임 - 다만, 현행 「고용정책 기본법」 제10조⁶⁾는 고용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에 고용정책심의회를 두고,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및 특별자치도에 지역고용심의회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제정안의 조치가 시행되어도 현재 예산 및 행정력의 범위 내에서 이행 가능할 것으로 예상됨
6	안 제8조(시·군·구 고용심의회)	○	• 공식추계

촉진과 고용안정 등에 관한 지역고용정책기본계획(이하 "지역고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3) 「고용정책 기본법」

제9조의2(지역 일자리 창출대책의 수립 등) ①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관할 지역 주민들에게 자신의 임기 중에 추진할 일자리 창출대책을 수립·공표할 수 있다.

②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일자리 창출대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할 지역의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조를 요청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할 지역의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연번	조·항(조제목)	추계여부	비고(추계 미 실시 사유)
7	안 제9조(시·도 및 시·군·구 고용심의회의 운영 등)	×	• 미첨부 - 제3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 제정안은 지역고용심의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전문위원회와 사무국을 둘 수 있도록 하면서, 지역인적자원 개발위원회⁷⁾가 시·도에 구성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시·도 고용심의회의 전문위원회로 볼 수 있도록 규정하는 내용 - 이므로, 제정안의 시행에 따라 국가의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음 - 제정안이 시행될 경우 전문위원회와 사무국 설치에 따른 기본경비나 인건비 등이 소요될 수 있으나, 현시점에서 전문위원회와 사무국을 둘 지방자치단체의 수와 이로 인해 필요한 기본경비 및 인건비 등 소요 재원의 규모를 합리적으로 검토하기 어려우므로, 장래에 발생할 추가재정소요 산출에 한계가 있음 - 참고로, 현행 「고용정책 기본법 시행령」 제15조⁸⁾는 지역고용심의회의 심의 사항을 보다 전문적으로 연구·심의하기 위한 ‘전문위원회’ 및 지역고용심의회의 회의에 부칠 안건을 검토·조정하고 그 밖에 지역고용심의회의 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실무위원회’등을 각각 둘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8	안 제10조(지역 고용 및 일자리 사업에 대한 컨설팅 등 지원)	×	• 미첨부 - 제3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 제정안은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하여금 지역 일자리사업의 효율화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컨설팅·의견제시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내용 - 이므로, 제정안의 시행에 따라 국가의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음 - 다만, 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를 산출하기 위해서는 장래에 발생할 국가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지원 사업의 시행 여부와 요건 등에 대한 정보가 필요하나, 아직 세부적인 내용이 구체화 되지 않아 현시점에서 장래에 발생할 추가재정소요를 예측하는 데 한계가 있음

-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일자리 창출대책의 추진성과를 확인하여 공표할 수 있고, 이를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④ 국가는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이 제1항에 따라 일자리 창출대책을 추진하는 데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⑤ 고용노동부장관은 일자리 창출대책의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관련 의견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시할 수 있다.
- ⑥ 지역 일자리 창출대책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 4) 지역고용 활성화 지원사업의 내용은 다음과 같음
1. 지역 내 산업, 고용 관련 정보의 수집·제공 등 지역의 인력수급 동향 조사에 필요한 사업

연번	조·항(조제목)	추계여부	비고(추계 미 실시 사유)
9	안 제11조(지역 고용영향평가의 실시)	—	• 미대상 – 제정안은 시·도지사로 하여금 소관 정책이 지역고용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지역고용영향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내용임 – 다만, 현행 「고용정책 기본법」 제13조⁹⁾는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소관정책이 일자리 증감 및 고용의 질 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평가(이하 "고용영향평가")하고, 그 결과를 정책의 수립·시행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 법에 따라 고용영향평가는 한국노동연구원 고용영향평가센터에서 시행하고 있음 – 제정안은 현행 고용영향평가와 유사하게 시·도지사가 소관 정책이 지역 일자리 증감 및 고용의 질 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평가하는 지역고용영향평가를 실시하고 이를 정책의 수립·시행에 반영하도록 노력할 의무를 규정하는 내용이나, 현행법 제13조제1항도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고용영향평가를 하고 그 결과를 정책의 수립·시행에 반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제정안의 시행으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추가재정소요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
10	안 제12조(지역 고용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	• 미첨부 – 제3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 제정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지역고용 및 직업정보를 대상으로 하는 지역고용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 관계 전산망의 이용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내용임 – 현행 「고용정책 기본법」 제15조의²¹⁰⁾는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하여금 고용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동 법에 따라 고용노동부는 국가 차원의 고용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고 있음 – 제정안이 시행될 경우 시스템의 범위가 지방자치단체로 확장되므로, 제정안의 시행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음 – 다만, 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를 산출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역고용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여부와 시스템에 요구되는 기능의 범위와 내용, 연계 방식, 정보화전략(ISP) 수립 내용 등에 따라 상이하게 나타날 수 있으므로 현시점에서 구체적인 추가재정소요의 규모를 검토하기 어려움

연번	조·항(조제목)	추계여부	비고(추계 미 실시 사유)
11	안 제13조(고용 위기지역의 지정)	—	• 미대상 – 제정안은 시·도지사 하역금 관할 행정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로서 급격한 고용감소 등으로 특별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을 고용위기지역(이하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받으려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시·도 고용심의회 심의를 거쳐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지정 대상 행정구역 및 지원 내용을 기재하여 고용위기지역의 지정을 신청하도록 규정하는 내용임 – 또한, 제정안은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 행정구역을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받으려는 경우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시·군·구 고용심의회 심의를 거쳐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지정 대상 행정구역 및 지원 내용을 기재하여 고용위기지역의 지정을 신청하도록 규정하는 내용임 – 현행 「고용정책 기본법」 제32조¹¹⁾는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하여금 국내외 경제사정의 변화 등으로 고용사정이 급격히 악화되거나 악화될 우려가 있는 업종 또는 지역에 대하여 사업주의 고용조정, 근로자의 실업 예방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면서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하여금 신청을 받은 경우 정책심의회 심의를 거쳐 해당 업종 또는 지역을 기간을 정하여 특별고용지원업종 또는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음 – 제정안은 현행법의 조문에서 고용위기지역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을 분리하여 규정하는 내용이므로, 제정안의 시행으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추가재정소요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

2. 지역 내 인력수급 상황 및 교육훈련 수요에 맞는 인력양성계획의 수립과 시행에 필요한 사업
 3. 지역 내 청년·여성·고령자 등 대상별 고용정책의 수립과 시행에 필요한 사업
 4. 지역 내 또는 지역 간 인력수급 불균형 해소 및 산업·지역 간 근로자 이동 지원에 관한 사업
 5. 지역 내 구직자·구인자에 대한 고용정보 제공·직업소개·직업지도·취업알선 등 고용지원서비스에 관한 사업
 6. 지역 기업의 고용창출·유지를 위한 고용환경의 개선, 근무형태의 변경, 인력의 재배치 등에 대한 지원에 필요한 사업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업 추진에 필요한 지원에 관한 사업
 8. 그 밖에 지역 일자리 창출·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 5)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 제3조(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등) ④ 지역 노사민정 협력증진을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2조(지역 노사민정협의회의 설치, 구성 및 기능)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 관할 지역의 근로자, 사용자 및 주민과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역 노사민정”이라 한다) 간 협력이 필요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지역 노사민정으로 구성된 지역노사민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 6) 「고용정책 기본법」

연번	조·항(조제목)	추계여부	비고(추계 미 실시 사유)
12	안 제14조(고용 위기지역에 대한 지원)	×	• 미첨부 - 제3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 제정안은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하여금 고용유지 및 고용촉진에 대한 지원, 실업자 취업 지원 대책 수립, 일자리 관련 사업비 우선 지원 등의 지원 사업 등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내용이므로, 제정안의 시행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음 - 다만, 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를 산출하기 위해서는 고용위기지역의 지정 규모, 지원 요건과 지원 방안 및 내용 등에 대한 정보가 필요하나, 현시점에서 장래에 발생할 다양한 변수를 예측하는데 한계가 있으므로 추가재정소요의 규모를 검토하기 어려움 - 참고로, 현행 「고용정책 기본법」 제32조제1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은 국내외 경제사정의 변화 등으로 고용사정이 급격히 악화되거나 악화될 우려가 있는 업종 또는 지역에 대하여 사업주의 고용조정, 근로자의 실업 예방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13	안 제15조(고용 위기지역에 대한 지정 해제)	—	• 미대상 - 제정안은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하여금 지역의 고용 사정이 호전되는 등 지원의 필요성이 적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고용정책심의회회의 심의를 거쳐 고용위기지역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내용임 - 다만, 제정안은 고용위기지역 지정 해제의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현시점에서 세부적인 내용을 검토하기 어려우나, 개정안의 조치가 이행되어도 현재의 행정력 범위 내에서 이행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추가재정소요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

제10조(고용정책심의회) ① 고용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에 고용정책심의회(이하 "정책심의회"라 한다)를 두고,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및 특별자치도에 지역고용심의회를 둔다. 이 경우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에 따른 지역 노사민정 간 협력 활성화를 위한 협의체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및 특별자치도에 구성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지역고용심의회로 볼 수 있다.

7)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22조의2(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의 구성·운영 등)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역별로 인적자원개발위원회(이하 "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인적자원개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6조(지역인자위 설치 등)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지방자치법」에 따른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의 행정구역, 지역 경제 및 노동시장권역, 업종 등을 기준으로 지역인자위를 설치한다. 이 경우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설치되는 지역노사민정협의회에 설

연번	조·항(조제목)	추계여부	비고(추계 미 실시 사유)
14	안 제16조(고용 위기지역 청년취업 지원)	×	• 미첨부 - 제3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 제정안은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하여금 18세 이상 34세 이하인 청년층의 고용위기지역 기업 취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이들을 고용하는 기업에 고용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내용이므로, 제정안의 시행으로 국가 재정의 추가소요가 발생할 수 있음 - 다만, 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는 장래에 발생할 국가의 고용장려금 지급 내용 및 요건에 따라 결정되나, 제정안은 지원대상, 지원 내용 및 지원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추가재정소요를 합리적으로 예측하는 데 한계가 있음
15	안 제17조(청년 근로자의 고용과 핵심인력의 장기 재직 촉진 지원)	×	• 미첨부 - 제3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 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고용위기지역 청년근로자의 고용과 핵심인력의 장기 재직을 촉진하기 위한 지원방안을 마련하도록 규정하는 내용이므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음 - 다만, 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를 산출하기 위해서는 고용위기지역 청년근로자의 고용과 핵심인력의 장기 재직을 촉진하기 위한 지원방안의 내용 및 규모에 대한 정보가 필요하나, 아직 세부적인 내용이 구체화 되지 않아 현시점에서 장래에 발생할 추가재정소요를 예측하는 데 한계가 있음

치할 수 있다.

8) 「고용정책 기본법 시행령」

제15조(지역고용심의회에 전문위원회) ① 지역고용심의회는 심의 사항을 보다 전문적으로 연구·심의하기 위하여 지역고용심의회에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는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16조(지역고용심의회에 실무위원회) ① 지역고용심의회는 회의에 부칠 안건을 검토·조정하고 그 밖에 지역고용심의회에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역고용심의회에 위원장 2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는 실무위원회를 둔다.

9) 「고용정책 기본법」

제13조(고용영향평가)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관정책이 일자리 증감 및 고용의 질 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평가(이하 "고용영향평가"라 한다)하고, 그 결과를 정책의 수립·시행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0) 「고용정책 기본법」

제15조의2(고용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5조제1항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같은 항 각 호의 고용·직업 정보를 대상으로 하는 전자정보시스템(이하 "고용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11) 「고용정책 기본법」

제32조(업종별·지역별 고용조정의 지원 등)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국내외 경제사정의 변화 등으로 고용사정이 급격히 악화되거나 악화될 우려가 있는 업종 또는 지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

연번	조·항(조제목)	추계여부	비고(추계 미 실시 사유)
16	안 제18조(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위탁)	×	• 미첨부 - 제3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 제정안은 고용노동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지역의 직업안전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고, 고용노동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문 시설과 인력을 갖춘 관계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내용임 - 또한, 제정안은 고용노동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 또는 단체가 해당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내용이므로, 국가 재정의 추가소요가 발생할 수 있음 - 다만, 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를 산출하기 위해서는 국가의 재정지원 여부와 규모에 대한 정보가 필요하나, 아직 세부적인 내용이 구체화 되지 않았으며, 지원 수준 또한 예산의 범위 내로 유동적이므로 추가재정소요를 합리적으로 산출하는 데 한계가 있음
17	안 제19조(벌칙)	—	• 미대상 - 제정안이 시행될 경우 세외수입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나, 재정 수입의 순증가액은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 제2조¹²⁾에 따른 비용추계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할 수 있다.

1. 사업주의 고용조정
2. 근로자의 실업 예방
3. 실업자의 재취업 촉진

4. 그 밖에 고용안정과 실업자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

② 제1항에 해당하는 업종 중에서 급격한 고용감소 등으로 특별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업종에 속하는 사업주나 사업주단체·근로자단체 또는 그 단체의 연합체 등은 해당 업종을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하여 줄 것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청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해당하는 지역 중에서 급격한 고용감소 등으로 특별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지역을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하여 줄 것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청할 수 있다.

④ 고용노동부장관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정책심의회 심의를 거쳐 해당 업종 또는 지역을 기간을 정하여 특별고용지원업종 또는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⑤ 고용노동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지정기간 중이라도 고용사정이 호전되는 등 특별한 지원의 필요성이 없어진 때에는 정책심의회 심의를 거쳐 그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지원 조치, 지정기간 및 지정기간의 연장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2)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비용추계서”라 함은 발의·제안 또는 제출되는 의안이 시행될 경우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재정지출의 순증가액 또는 재정수입의 순감소액(이하 “비용”이라 한다)에 관하여 추계(이하 “비용추계”라 한다)한 자료를 말한다.

2.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

-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하는 제정안의 부칙을 고려하여 추계기간은 2027년부터 2031년까지로 함

3. 재정수반요인별 상세 추계내역

- 제정안은 현행 「고용정책 기본법」에서 지역고용 정책 관련 사항을 분리하여 별도로 입법하려는 내용임

[표 1] 제정안 및 고용정책 기본법 내용 비교

구분	제정안	고용정책 기본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
	제2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6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시책)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
제2장 지역고용 활성화 정책의 수립 및 추진체계	제4조(지역고용 정책기본계획의 수립)	제8조(고용정책기본계획의 수립·시행) 제9조(지역고용정책기본계획의 수립·시행)
	제5조(지역 일자리 창출대책의 수립 등)	제9조의2(지역 일자리 창출대책의 수립 등)
	제6조(지역고용 활성화 지원사업)	—
	제7조(시·도 고용심의회)	제10조(고용정책심의회)
	제8조(시·군·구 고용심의회)	—
	제9조(시·도 및 시·군·구 고용심의회 운영 등)	—
제3장 지역고용 활성화 기반 구축	제10조(지역고용 및 일자리사업에 대한 컨설팅 등 지원)	—
	제11조(지역고용영향평가의 실시)	제13조(고용영향평가)
	제12조(지역고용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제15조의2(고용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제4장 고용위기지역의 지정 등	제13조(고용위기지역의 지정)	제32조(업종별·지역별 고용조정 지원 등)
	제14조(고용위기지역에 대한 지원)	
	제15조(고용위기지역의 지정 해제)	제32조2(고용재난지역의 선포 및 지원)
	—	
	제16조(고용위기지역 청년취업 지원)	—
	제17조(청년근로자의 고용과 핵심인력 장기재직 촉진 지원)	—
제5장 보칙 및 벌칙	제18조(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위탁)	제39조(권한의 위임), 제40조(위탁)
	제19조(벌칙)	제41조(벌칙)

□ 제정안은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역 일자리 창출대책, 지역고용 활성화 지원사업, 고용위기지역 지정 신청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군·구 고용심의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둘 이상의 시·군·구를 관할하는 통합형 지역고용심의회 설치도 가능하도록 규정하는 내용임

○ 현행 「고용정책 기본법」은 지역고용과 관련하여 시·도에 ‘지역고용심의회’를 두도록 하고,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노사민정 협의체’가 시·도에 구성되어 있는 경우 이를 지역고용심의회로 갈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¹³⁾

－ 또한, 현행 「고용정책 기본법 시행령」은 하나 또는 둘 이상의 시·군·구에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지역고용심의회에 ‘시·군·구 고용심의회’를 둘 수 있도록 하고,¹⁴⁾ 지역고용심의회 심의 사항을 보다 전문적으로 연구·심의하기 위한 ‘전문위원회’¹⁵⁾ 및 지역고용심의회 회의에 부칠 안건을 검토·조정하고 그 밖에 지역고용심의회 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실무위원회’¹⁶⁾ 등을 각각 둘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13) 「고용정책 기본법」

제10조(고용정책심의회) ① 고용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에 고용정책심의회(이하 “정책심의회”라 한다)를 두고,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및 특별자치도에 지역고용심의회를 둔다. 이 경우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에 따른 지역 노사민정 간 협력 활성화를 위한 협의체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및 특별자치도에 구성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지역고용심의회로 볼 수 있다.

② 정책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 10. (생략) ③ ~ ⑤ (생략)

⑥ 정책심의회, 지역고용심의회 및 전문위원회의 구성·운영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4) 「고용정책 기본법 시행령」

제17조(지역고용심의회) ① 지역고용심의회 심의 사항 중 하나 또는 둘 이상의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역고용심의회 의결을 거쳐 지역고용심의회에 시·군·구 고용심의회를 둘 수 있다.

② 시·군·구 고용심의회 위원장은 제1항의 심의가 필요한 그 지역의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된다. 다만, 둘 이상의 시·군·구에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군·구 고용심의회를 두는 경우에는 지역고용심의회 위원장이 관련 지역의 시장·군수·구청장 중에서 단독 또는 공동 위원장을 지명한다.

③ 시·군·구 고용심의회 위원은 제13조제2항제1호 각 목의 사람 중에서 시·군·구 고용심의회 위원장의 추천을 받아 시·도지사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④ 시·군·구 고용심의회 위원장은 시·군·구 고용심의회가 심의한 내용과 심의 결과를 지역고용심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5) 「고용정책 기본법 시행령」

제15조(지역고용심의회 전문위원회) ① 지역고용심의회 심의 사항을 보다 전문적으로 연구·심의하기 위하여 지역고용심의회에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는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16) 「고용정책 기본법 시행령」

제16조(지역고용심의회 실무위원회) ① 지역고용심의회 회의에 부칠 안건을 검토·조정하고 그 밖

- 2025년 말 기준 광역자치단체는 모두 지역 노사민정협의회를 설치하고 있으며, 226개 기초자치단체 중 151개가 지역 노사민정협의회를 설치·운영(조례제정 기준)하고 있음

[표 3] 지역 노사민정협의회 설치·운영 현황: 2025년 말 기준

구분	설치	권역	지자체명
광역	17개소		서울, 부산, 대구, 울산, 인천, 광주, 대전,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기초	151개소	서울(7)	성동구, 동대문구, 도봉구, 노원구, 금천구, 송파구, 강동구
		부산(5)	남구, 사하구, 금정구, 연제구, 기장군
		대구(3)	동구, 달서구, 달성군
		인천(7)	중구, 동구, 미추홀구, 남동구, 부평구, 계양구, 서구
		광주(5)	동구, 서구, 남구, 북구, 광산구
		대전(1)	대덕구
		울산(5)	중구, 남구, 동구, 북구, 울주군
		경기(31)	수원, 성남, 고양, 용인, 부천, 안산, 안양, 남양주, 화성, 평택, 의정부, 시흥, 파주, 광명, 김포, 군포, 광주, 이천, 양주, 오산, 구리, 안성, 포천, 의왕, 하남, 여주, 동두천, 과천, 양평, 가평, 연천
		강원(12)	춘천, 원주, 강릉, 동해, 태백, 속초, 삼척, 횡성, 영월, 정선, 인제, 양양
		충북(11)	청주, 충주, 제천, 보은, 옥천, 증평, 진천, 괴산, 음성, 단양, 영동
		충남(15)	천안, 공주, 보령, 아산, 서산, 논산, 계룡, 당진, 금산, 부여, 서천, 청양, 홍성, 예산, 태안
		전북(9)	전주, 군산, 익산, 김제, 완주, 무주, 임실, 부안, 고창
		전남(22)	목포, 여수, 순천, 나주, 광양, 담양, 곡성, 구례, 고흥, 보성, 화순, 장흥, 강진, 해남, 영암, 무안, 함평, 영광, 장성, 완도, 진도, 신안
		경북(10)	포항, 경주, 김천, 안동, 구미, 영주, 영천, 경산, 성주, 칠곡
		경남(8)	창원, 진주, 통영, 사천, 김해, 거제, 양산, 함안

자료: 고용노동부 제출자료

- 이와 관련하여 고용노동부는 “지역노사민정 상생협력지원” 사업(2026년 예산 21억원)을 재원으로 지역 노사민정협의회(17)가 설치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협의회 운영 및 사업 추진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고 있음
 - － 매년 공모를 통해 지방자치단체를 선정하여 보조금을 교부하고 있으며(기초자치단체 국고보조율 $\pm 80\%$), 2026년에는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와 40개 기초지방자치단체에 사업비를 교부할 계획임

에 지역고용심의회의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역고용심의회의에 위원장 2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는 실무위원회를 둔다.

- 17)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의 노사 및 주민대표, 지방고용노동관서 등과 협력하여 지역경제발전을 위해 일자리 창출 및 인적자원 개발, 노사관계 안정 등 지역 고용·노동정책과 관련된 사항을 발굴하고 협의·심의하는 회의체

- － 본 추계서는 지역 노사민정협의회와 관련한 조례는 제정되어 있되, 2026년에는 사업비가 편성되지 않은 111개 기초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현행 지원 사업이 확대된다는 가정을 토대로 산출하며, 관련 조례가 제정되지 않은 기초자치단체는 중 지역 노사민정협의회를 설치·운영할 기초자치단체가 있을 수 있겠으나, 이러한 요인에 의한 변화는 없는 것으로 가정

[표 4] 지역 노사민정협의회 관련 지역별 보조금 교부 현황

(단위: 천원)

연번	지자체	2025년	2026년	연번	지자체	2025년	2026년
1	서울	0	21,114	10	강원	23,760	36,124
2	부산	16,180	36,990	11	충북	28,700	65,195
3	대구	35,334	71,250	12	충남	80,000	140,000
4	인천	44,500	50,277	13	전북	21,000	98,600
5	광주	37,000	76,808	14	전남	47,340	77,824
6	대전	13,050	30,000	15	경북	0	59,375
7	울산	6,740	20,160	16	경남	41,000	63,066
8	세종	12,125	12,500	17	제주	71,700	76,000
9	경기	90,893	130,000	합 계		569,322	1,065,283
1	광주 서구	0	40,000	24	충북 제천시	0	14,280
2	광주 북구	15,606	0	25	충북 음성군	8,238	12,643
3	광주 광산구	25,000	36,000	26	충남 천안시	17,860	42,300
4	울산 남구	12,148	10,608	27	충남 보령시	0	17,553
5	울산 북구	20,532	38,250	28	충남 아산시	21,280	28,800
6	울산 울주군	3,825	4,760	29	충북 논산시	18,842	28,070
7	경기 성남시	4,760	0	30	충남 당진시	21,202	34,239
8	경기 안양시	13,412	40,000	31	충남 홍성군	14,223	10,000
9	경기 부천시	25,000	50,000	32	충남 공주시	24,386	0
10	경기 광명시	0	9,580	33	전북 전주시	23,417	36,567
11	경기 평택시	12,114	7,650	34	전북 익산시	17,488	24,894
12	경기 안산시	15,675	23,013	35	전남 여주시	18,972	27,180
13	경기 시흥시	15,108	0	36	전남 순천시	15,336	36,000
14	경기 용인시	27,270	29,820	37	전남 광양시	11,832	25,201
15	경기 이천시	22,043	23,351	38	경북 포항시	0	15,164
16	경기 화성시	25,045	40,845	39	경북 김천시	0	28,000
17	강원 원주시	22,158	15,952	40	경북 구미시	25,255	24,798
18	강원 강릉시	4,570	15,300	41	경북 경산시	0	26,180
19	강원 동해시	0	10,621	42	경북 칠곡군	0	13,090
20	강원 속초시	13,307	35,110	43	경남 창원시	17,834	0
21	강원 삼척시	29,594	38,988	44	경남 김해시	0	10,983
22	충북 청주시	18,346	31,500	45	경남 거제시	0	8,627
23	충북 충주시	9,000	28,800	합 계		590,678	994,717

자료: 고용노동부 제출자료

- 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는 현재 미지원 중인 지역고용심의회(지역 노사민정협의회)에 대한 지원에 따른 비용으로, 신규 지원하는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수에 지원단가를 곱하여 추계
 - (신규 지원 기초지방자치단체 수) 2025년 기준 고용노동부의 “지역노사민정협력활성화” 사업에서 지원 중인 40개 기초지방자치단체를 제외한 나머지 111개 기초지방자치단체
 - (지원단가) 2026년 기준 기초자치단체 1개소당 지원단가 2,489만원(국비 기준)이 추계기간 동안 유지되는 것으로 가정

[표 4] 지역고용심의회 설치·운영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7~2031년

(단위: 개, 백만원)

	2027	2028	2029	2030	2031	합 계	연평균
신규 지원 기초지방자치단체 수(A)	111	111	111	111	111	555	111
1개소당 지원단가(B)	25	25	25	25	25	124	25
국비(C = A×B)	2,760	2,760	2,760	2,760	2,760	13,802	2,760
지방비(D = C÷80%×20%)	690	690	690	690	690	3,450	690

주: 1.국비는 국고보조율(80%)을 추계기간 동안 동일하게 적용

2.각 표의 합계는 단수조정으로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IV. 부대의견

- 본 추계 결과는 재량규정인 재정수반요인에 대한 일정 예산의 편성을 전제로 한 것으로서, 향후 실제 추가재정소요는 달라질 수 있음
 - 제정안의 다른 재정수반요인에 대해서는 추계가 곤란하여 일부 재정수반요인에 대해서만 추계한 결과로, 제정안의 전체적인 재정소요액은 추계된 금액을 상회할 것임

V.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경제비용추계과	남 희	예승우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남 희	02-6788-3737	nhee@nabo.go.kr